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35
----------	-------

발의연월일 : 2026. 7. 8.

발 의 자 : 김우영 · 김문수 · 한준호  
이언주 · 이광희 · 김 현  
이주희 · 윤종균 · 김 윤  
박상혁 · 황정아 · 염태영  
박민규 · 최혁진 · 복기왕  
박홍배 · 송재봉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영상 등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되,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고지·표시의무를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고지·표시의무가 완화되는 경우 작품 단위로 1회 고지·표시하면 충분할 것임에도 법문상 관련 기준이 없어 인공지능사업자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배경 생성이나 색 보정 등 단순한 보조도구로서의

인공지능 사용까지 표시의무를 부과하여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의 예외에 관한 규율을 명확히 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련된 문화상품”으로,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필요최소한의 방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표시”를 “제2항에 따른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로 한다.

다만, 인공지능사업자가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가 표준적인 편집의 보조에만 활용되거나 이용자가 제공한 데이터 또는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